

화성비봉 A-3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3.11.10.]

1. 건설위치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구포리 일원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A-3블록 내

'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 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화성비봉 A-3블록은 공공분양(659호)과 행복주택(329호)이 혼합된 단지로, 금회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10.)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 학 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 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1983.11.11~2004.11.10 출생)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 혼 부 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2016.11.11 이후 출생)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 부모 가족 : 6세 이하(2016.11.11 이후 출생)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65세 이상의 사람(1958.11.10 이전 출생)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화성비봉 A-3블록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본문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2. 공급일정

청약 신청 (인터넷 PC/모바일)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대상자 서류 제출	당첨자 발표	계약 체결 (전자계약)
'23.11.28(화) 10:00 ~ '23.11.30(목) 18:00 ※ 24시간 신청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청약 신청내용 변경은 청약 접수기간 중 가능 (청약 마감이후 변경불가)	'23.12.08(금) 17:00 이후 (확인방법)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조회	'23.12.11(월) ~ '23.12.15(금) (서류제출방법) 등기우편 (등기우편 발송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화성비봉 A-3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 등기우편은 '23.12.15(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일반우편 접수불가	'24.04.10(수) 17:00 이후 (확인방법)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자 명단' 조회 또는 ARS(1661-7700)	'24.04.22(월) 10:00 ~ '24.04.24(수) 17:00 (전자계약)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현장계약) '24.04.23(화) 10시~16시 (12시~13시 제외) ※ LH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 **청약 신청내용 변경(수정 또는 삭제)은 청약 접수기간 중 가능합니다. (단, 11.30(목)은 18시 전까지)**
- **(현장접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아래의 장소에서 청약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기간: '23.11.30(목) 10:00~16: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장소: LH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수인분당선 오리역 1번 출구)
 - 신분증,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공고문 [7. 신청서류] 참고, 서류 미지참 시 접수 불가)**
 - 현장 접수 시 혼잡이 예상되므로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합니다.
 - **현장 접수자는 별도의 서류제출 기간이 없으며,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같음합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23.12.08(금) 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및 서류제출안내문 확인 방법**
 - P C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청약』 클릭 → 『청약결과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클릭 → 『청약결과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공고문 [7. 신청서류]를 참고하셔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23.12.15(금) 우체국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함)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변경(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 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됩니다.

3.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임대대상

주택형	세대 당 계약면적(㎡)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시기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공용	주차장			
59A	59.91	27.1593	7.5751	42.7346	137.3790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 지역 난방	'25.6월 (예정)
59A1(주거약자)	59.91	27.1593	7.5751	42.7346	137.3790		
59B	59.61	27.7765	7.5371	42.5206	137.4442		
59B1(주거약자)	59.61	27.7765	7.5371	42.5206	137.4442		

■ 임대조건

공급 형별	공급 대상	공급호수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년)
		우선공급 (162)	일반공급 (163)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	잔금					
59A	대학생	21	55	57,460	2,873	54,587	248,990	(+) 25,000 (-) 48,000	82,460 9,460	103,150 388,990	6
	청년(소득無)	36		57,460	2,873	54,587	248,990	(+) 25,000 (-) 48,000	82,460 9,460	103,150 388,990	
	청년(소득有)			60,840	3,042	57,798	263,640	(+) 27,000 (-) 50,000	87,840 10,840	106,140 409,470	
	신혼부부·한부모가족	50		49	67,600	3,380	64,220	292,930	(+) 30,000 (-) 56,000	97,600 11,600	
	주거급여수급자	5	6	50,700	2,535	48,165	219,700	(+) 20,000 (-) 42,000	70,700 8,700	103,030 342,200	20
59A1	고령자 (주거약자용)	12	13	64,220	3,211	61,009	278,280	(+) 28,000 (-) 53,000	92,220 11,220	114,940 432,860	20
59B	대학생	7	19	57,120	2,856	54,264	247,520	(+) 25,000 (-) 47,000	82,120 10,120	101,680 384,600	6
	청년(소득無)	12		57,120	2,856	54,264	247,520	(+) 25,000 (-) 47,000	82,120 10,120	101,680 384,600	
	청년(소득有)			60,480	3,024	57,456	262,080	(+) 26,000 (-) 50,000	86,480 10,480	110,410 407,910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7		17	67,200	3,360	63,840	291,200	(+) 29,000 (-) 56,000	96,200 11,200	
	주거급여수급자	1	2	50,400	2,520	47,880	218,400	(+) 20,000 (-) 42,000	70,400 8,400	101,730 340,900	20
59B1	고령자 (주거약자용)	1	2	63,840	3,192	60,648	276,640	(+) 28,000 (-) 53,000	91,840 10,840	113,300 431,220	20

- 본 단지는 공공분양(659호)과 행복주택(329호)이 혼합된 주택이며, 금회 모집하는 행복주택의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추첨을 실시합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 기둥 주변 상부 슬래브 부위에 전단보강 철근 누락이 확인됨에 따라 입주 전까지 보강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이유로 청약취소, 계약해지, 보상요구 등은 불가하오니 신청 시 유의 바랍니다.
- 59A형의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59B형의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 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59A형 대학생·청년 계층의 남은 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59A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남은 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 → 대학생·청년 계층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59A형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남은 주택은 대학생·청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59B형 대학생·청년 계층의 남은 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59B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남은 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 → 대학생·청년 계층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59B형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남은 주택은 대학생·청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중 **4개호**(303동 101호, 306동 101호, 308동 104호, 309동 104호)는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배정되었으며, 입주개시 전 별도 공고를 통해 어린이집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공급호수는 향후 유관기관과의 최종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59A1/59B1형 (주거약자용)]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으로,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이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화성비봉 A-3블록은 전세대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59A,A1형에는 신발장, 현관시스템선반, 주방가구, 냉장고장, 세탁선반, 가스쿡탑(3구)이 설치됩니다.
- 59B,B1형에는 신발장, 주방가구, 냉장고장, 세탁선반, 가스쿡탑(3구)이 설치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행복주택 거주 중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운 임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한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25.6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
- ② 신청자의 배우자
-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및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 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0.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안내**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4-1. 대학생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10)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㉓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㉔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 ①-㉓ (대 학 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①-㉔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	4,024,661 원 이하	120%
2인	5,505,914 원 이하	110%
3인	6,718,198 원 이하	100%
4인	7,622,056 원 이하	100%
5인	8,040,492 원 이하	100%
6인	8,701,639 원 이하	10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61,147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대학생 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적용 대상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신청자의 부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 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할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일반공급 경쟁 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 선정기준 : 순위 → 추천**

※ 59A/B형의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천함

■ **순위**

1순위	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이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사람
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중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화성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이외 지역)가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사람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10)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자

대 학 생	화성시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사람
취업준비생	화성시에 거주하는 사람

-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 공급신청자로 전환됨
(단, **우선공급자격 미충족 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처리**되므로, 반드시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서류의 발급가능 여부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경쟁 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 선정기준 : 배점 → 추천**

■ **배점**

항목	3점	1점
대 학 생	부모 모두 화성시 및 연접지역(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외에 거주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화성시 외 연접지역(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에 거주(단, 부모 모두 화성시 외에 거주해야 함)
취업준비생	화성시에 3년 이상 거주	화성시에 3년 미만 거주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4-2. 청년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10)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㉓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㉒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 ①-㉓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①-㉒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3)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주택공급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1인	4,024,661 원 이하	120%
	2인	5,505,914 원 이하	110%
	3인	6,718,198 원 이하	100%
	4인	7,622,056 원 이하	100%
	5인	8,040,492 원 이하	100%
	6인	8,701,639 원 이하	100%
세대원(본인)	1인	4,024,661 원 이하	120%

* 7인이상의 해당가구는 6인 해당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61,147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9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하**일 것
- ⑤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됨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 ①-㉒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 ①-㉒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 ①-㉒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 ※ 청년 계층의 해당 세대는

구분(신청자 기준)	해당세대	비고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세대원이거나 단독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

▶ **일반공급 경쟁 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 선정기준 : 순위 → 추천**

※ 59A/B형의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천함

■ 순위

1순위	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중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화성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이외 지역)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10)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화성시가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단, **우선공급자격 미충족 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처리**되므로, 반드시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서류의 발급가능 여부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우선공급 경쟁 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 선정기준 : 배점 → 추천**

■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화성시에 3년 이상 거주	화성시에 3년 미만 거주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 신청 시 청약저축 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 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저축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가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이며,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납입 회차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 터 넷 직접 발급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화면 중앙의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 [일반공급용] 선택 → 동의하기 →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 → 청약신청 주택 선택 → 발급신청 후 내역 확인 * (주택명) 화성비봉 A-3블록 행복주택 (주택관리번호) 2023000551
은행 방문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신청 → 발급내역 확인

4-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1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㉓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㉒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㉒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 ①-㉓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 ①-㉒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①-㉒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일반 신혼부부		맞벌이 신혼부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2인	5,505,914 원 이하	110%	6,506,989 원 이하	130%
3인	6,718,198 원 이하	100%	8,061,838 원 이하	120%
4인	7,622,056 원 이하	100%	9,146,467 원 이하	120%
5인	8,040,492 원 이하	100%	9,648,590 원 이하	120%
6인	8,701,639 원 이하	100%	10,441,967 원 이하	12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61,147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일 것
-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의 해당 세대란

해당세대	비고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③,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됨)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 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될 (반드시 공고문 [10. 유의사항의 '기타사항' 확인])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일반공급 경쟁 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중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화성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이외 지역) 가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10) 현재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화성시**에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본인)이 거주하는 사람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단, **우선공급자격 미충족 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처리**되므로, 반드시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서류의 발급가능 여부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경쟁 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 선정기준 : 배점 → 추첨**

■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화성시에 3년 이상 거주	화성시에 3년 미만 거주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청약저축 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 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저축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가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이며,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납입 회차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 터 넷 직접 발급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화면 중앙의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 [일반공급용] 선택 → 동의하기 →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 → 청약신청 주택 선택 → 발급신청 후 내역 확인 * (주택명) 화성비봉 A-3블록 행복주택 (주택관리번호) 2023000551
은행 방문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신청 → 발급내역 확인

4-4. 고령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1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65세 이상인 자

-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	4,024,661 원 이하	120%
2인	5,505,914 원 이하	110%
3인	6,718,198 원 이하	100%
4인	7,622,056 원 이하	100%
5인	8,040,492 원 이하	100%
6인	8,701,639 원 이하	100%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61,147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하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고령자의 해당 세대란

해당세대	비 고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③,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 일반공급 경쟁 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 선정기준 : 추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10)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화성시에 신청자 본인이 거주하는 사람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단, 우선공급자격 미충족 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처리되므로, 반드시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서류의 발급가능 여부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경쟁 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 선정기준 : 배점 → 화성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 배점

항목	3점	2점	1점
① 신청자 나이	75세 이상	70세 이상~75세 미만	70세 미만~65세 이상
② 거주지 및 거주기간	화성시에 5년 이상 거주	-	화성시에 5년 미만 거주
③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14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3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4-5.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1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해당세대	비 고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일반공급 경쟁 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 선정기준 : 추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10)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화성시에 신청자 본인이 거주하는 사람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단, 우선공급자격 미충족 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처리되므로, 반드시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서류의 발급가능 여부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경쟁 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 선정기준 : 배점 → 화성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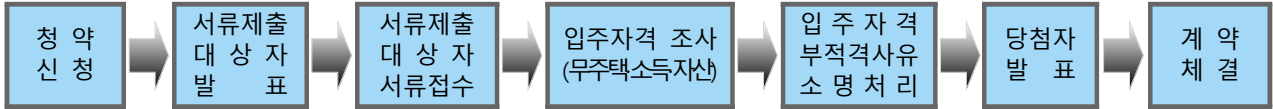
■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화성시에 5년 이상 거주	화성시에 5년 미만 거주
②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장애인,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 : 3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5. 입주자 선정절차 및 청약 신청방법

■ 입주자 선정절차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체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청 유의사항 (**신청 전 반드시 읽어보셔야 합니다.**)

-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및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신청순위 및 배점, 신청자의 해당서류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역 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 시 공고일(2023.11.10) 기준 화성시 거주 시에는 해당주택 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표등본상 화성시에서 거주를 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계속 거주 기간만 인정**)

■ 인터넷(PC) 청약접수 방법

[청약기간: '23. 11. 28(화) 10:00 ~ 11. 30(목) 18:00]

■ 신청방법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준비 → LH청약플러스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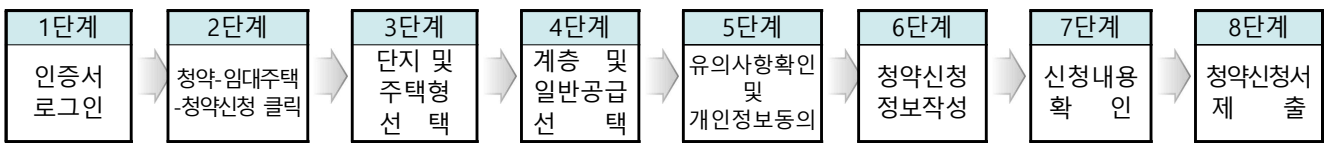
①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청약플러스 접속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하기 →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로그인

③ 인터넷신청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 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3.11.28(화) 10:00 ~ 11.30(목) 18: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 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거주지역 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 시 공고일 기준 화성시 거주 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표등본상 화성시 거주시작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 청약접수 방법

[청약기간: '23. 11. 28(화) 10:00 ~ 11. 30(목) 18:00]

■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어플 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①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어플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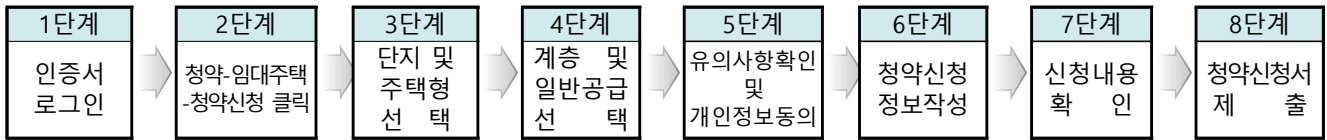
- IOS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앱 다운
-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앱 다운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플러스(<https://www.apply.lh.or.kr>)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연습하기 → "사전준비 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공동인증서 설치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

-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있거나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

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플러스(www.apply.lh.or.kr) → 청약 → 임대주택 → "사전준비 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모바일 신청



■ 유의사항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청약플러스 앱(App)의 '인터넷청약 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모바일 청약 건을 PC에서 수정·취소가 가능하며, PC에서 청약한 건을 모바일에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3.11.28(화) 10:00 ~ 11.30(목) 18: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 하시기에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거주지역 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 시 공고일 기준 화성시 거주 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표등본상 화성시 거주시작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 모바일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당첨자 확인, 계약내역 조회, 보증금 납부내역 조회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 환경에서 청약하시면 데이터 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청약접수 방법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에 한함)

기 간	11.30(목) 10:00 ~ 16: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약 도	
장 소	LH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대 중 교통편	(지하철) 수인분당선 오리역 1번 출구(도보 2분 거리) (버 스) 오리역 하차 - 일반버스 : 60, 101, 116-1, 116-3, 300, 370, 390, 520, 700-2, 720-1A, 720-2, 820 - 간선버스 : 102, 1101, 1241, 1303, 3500, 7007-1, 8100, 8106, 8109		

구 비 류	<p><input type="checkbox"/> 아래 서류와 [7.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미지참 시 접수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인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 관계인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 시(예비배우자 포함) :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양식_별지4),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공사양식_별지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p><input type="checkbox"/> 현장접수 시 혼잡이 예상되므로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반드시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7. 신청서류] 참고)</p>
--------------	--

6. 인터넷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3.12.08(금) 17:00 이후**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P C : LH청약플러스 → 『청약』 클릭 → 『청약결과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청약결과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으로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 서류제출기간 : **2023.12.11(월) ~ 12.15(금)** [23.12.15(금)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 됨]
- * 서류제출방법 : **등기우편으로 제출 (등기우편 외 방법은 모두 접수 불가)**
- * 제출서류 : 공고문 [7. 신청서류] 및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될 서류제출안내문을 확인하여 제출
- * 우편발송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화성비봉 A-3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우편번호 13637), 봉투 겉면에 **"이름, 접수번호, 신청형"** 반드시 기재

7.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3.11.10)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p>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p> <p>※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1.10) 이후 발급분에 한함</p> <p>※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기관 문의 후 미리 관련 서류 발급 요망</p> <p>※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예시) 123456-1234567 (O), 123456-1***** (X)</p> <p>※ 서류 제출시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기한 내에 제출 (현장청약 접수자의 경우 현장방문시 제출)</p> <p>※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p> <p>※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p>

■ **현장방문 청약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추가 구비(제출)서류(PC·모바일 신청자는 해당사항 없음)**

※ 65세 이상 등 현장에서 청약접수를 희망하실 경우 기본서류와 더불어 아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여 청약장소로 내방

구분	구비서류
본인이 직접 방문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방문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방문신청할 때 (예비배우자 포함)	①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위임장 (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공사양식_별지4) ③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공사양식_별지4)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청약신청시점에 제출**

구비서류	비고	부수	
신청자 전원 필수 제출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등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예비입주자 중복신청 불가사항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의방법) 내용 확인 후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별지 1-1)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성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 제외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각 1통 (별지 1-2, 1-4)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성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작성 제외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불필요 ※ 확정일자 대신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으로 갈음하여 제출 가능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 (주의)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별지 1-3)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성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작성 제외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불필요 ※ 확정일자 대신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으로 갈음하여 제출 가능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 (주의)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별지 1-3)

해 당 자 제 출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 추가 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한부모가족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거소사실증명서) 등 추가 제출 • 신혼부부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1통
	임신진단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각1통
	기타서류	• 그 밖에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급대상자(계층)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구비서류	발급처
대 학 생 계 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졸업예정증명서 	<p>해당 대학</p> <p>별지 2호</p> <p>해당 대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준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자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청 년 계 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19세 이상 ~ 39세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p>국민연금공단 등</p> <p>국민건강보험공단</p>
	<p>[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p>국민연금공단 등</p> <p>국민건강보험공단</p>
	<p>[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p>지방고용노동청</p> <p>국민연금공단</p> <p>국민건강보험공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초년생 	

		<p>[예술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p>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민연금공단</p> <p>국민건강보험공단</p>
	해당자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 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 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사람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시 청약통장 사본 제출(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p>해당 직장</p> <p>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p> <p>해당 학교</p>
	신혼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행정복지센터
	예비 신혼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제출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미혼인 경우에도 발급가능) ※ 혼인 후 혼인관계증명서 재제출(입주시점에 미제출 시 당첨 및 계약 무효 처리됨) ※ 입주 시 혼인 후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발급, 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추가 제출 (입주시점에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p>별지 3-1호 별지 3-2호</p> <p>행정복지센터</p>
신혼부부 계층	해당자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가 아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 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본인 또는 배우자) 사본 제출(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p>국민연금공단 등</p> <p>해당직장</p> <p>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p>
	고령자 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공급신청 시 장애인등 배점(③)을 받고자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이후 등록자) 	<p>행정복지센터</p> <p>국가보훈처(지청)</p> <p>국가보훈처(지청)</p>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애등급 1~14급자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 우선공급신청 시 국가유공자 등 배점(②)을 받고자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이후 등록자) - 5.18민주화유공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2024.04.10(수) 17: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태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합니다.
-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자조회』 클릭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클릭

■ 계약안내(전자계약 또는 현장계약)

-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입금계좌 및 계약 상세절차 등)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안내 예정)**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24. 4. 22(월) 10:00 ~ 4. 24(수) 17: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 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참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계약체결 절차】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합니다.
- ※ 「1차 SMS」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 ~ 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1차 SMS」는 **청약신청 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 「PC 계약체결 또는 모바일 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하여야 합니다.**
-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 **현장계약 체결** ['24. 4. 23(화) 10:00 ~ 16:00]

- **계약장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 및 미성년자**에 한하여 현장계약이 가능합니다.
- 당참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공통서류(본인 + 대리인 계약 시 모두 지참)	대리인 계약 시 추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 가능) • 계약자 신분증 지참 및 사본 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참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가 대리계약 시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가 대리 계약 시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양식), 당참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참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당참자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당참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9.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 자산	<p>부동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p>자동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p>금융 자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p>기타 자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p>※ 총 자산 산정 시 자산합계금액에서 부채 차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월평균 보수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소득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 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 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기타 자산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정보 조회결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10.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p>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p>	<p>■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border="1" data-bbox="279 443 1436 600"> <thead> <tr> <th>입주자격</th> <th>최대 거주기간</th> </tr> </thead> <tbody> <tr> <td>대학생, 청년 계층</td> <td>6년</td> </tr> <tr> <td>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td> <td>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td> </tr> <tr> <td>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td> <td>20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행복주택 입주자는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동일 면적형의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할 경우 변경하여 갱신) 대학생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p>■ 재청약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6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6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p>예비 입주자</p>	<p>■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셔야 하며, 변경 미통보에 따른 손해책임은 공사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p>자동차 등록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3년의 경우 3,683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갱신계약 등</p>	<p>■ 갱신계약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19세 이상 39세 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신청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 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 배우자의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신청 서류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기타사항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 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p>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수속 시 혼인 관련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 각각 제출) 각 1부씩]를 제출하여야 하며, 혼인신고 후 처리기간이 수일이상(1~2주)이 소요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어 입주 전까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혼인신고 신청 중인 접수증은 제출 불가함)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대출 가능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p>지구 및 단지 특성</p>	<p>■ 지구 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55호, 2014.09.23.)로 최초 사업승인된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기반 시설은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49호, 2023.09.25.)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6차), 지구 계획변경(9차) 승인”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나 승인조건 이행, 지자체 의견, 민원 등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등이 일부 변경 예정임 • 본 지구의 개발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지구단위 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내에는 소셜믹스(공공분양·행복주택)·공공임대(국민·영구·행복)·일반분양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음 • 지구 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의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화성비봉 사업지구 내 학생배치 여건, 학생유입 규모 변동 등 학생배치계획 변동요인 발생 및 교육정책 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학교 설립계획 및 학생배치계획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지구 내 블록별 공동주택 입주 시기, 인근 학교 현황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학생배치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며, 해당 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계획을 따름 • 지구 내 학교 등의 용지는 해당 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공원녹지 조경공사,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
-------------------	--

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입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공원, 녹지, 하천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쇄 상에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외부여건

- 단지 동측 반경 200m 이내에 위험물 저장시설인 '주유소'가 존재하며, 폐기물 처리시설은 사업 지구 내에 위치하지 않음
- 단지 북측에서 3km 이내에 市 공공하수처리장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 단지 남측 반경 700m 이내 목장 및 과수원이 있음
- 단지 북서측 반경 700m 이내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음
- 단지 남측 직선 800m 거리에 왕래봉산 분묘가 위치함
- 단지 서남측 직선 600m 거리에 분묘가 위치함
- 단지 남동측 직선 400m 거리에 소형공장이 위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남서쪽 직선 3km 거리에 양노공단이 위치하고 있어 대형 트럭이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지 서측에는 공동주택 용지가 계획되어 있고, 공사가 예정되어 비산먼지 및 공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계획(건축, 토목, 조경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화성비봉지구 내·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청약·상담창구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외의 조경석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접 공원·녹지 및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 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가로등, 공원, CCTV 및 교통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이 단지 인근에 설치될 예정으로 전력, 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 설치에 따라 지상에 시설물이 노출될 수 있음
- 단지 내·외의 옹벽 등 구조물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경계 담장 등은 상위계획(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생울타리 담장 등이 설치되며, 지구단위 계획지침 또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재질,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주변 도로 및 상업시설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부여건

- 단지 내부여건을 확인한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기둥 주변 상부 슬래브 부위에 전단보강 철근 누락이 확인됨에 따라 입주 전까지 보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이유로 청약취소, 계약해지, 보상요구 등은 불가함**
- 생활자원보관소(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아파트 주변 1층에 설치되어 있어 저층 세대는 쓰레기로 인한 냄새, 벌레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저층부 세대는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동 전면, 후면, 조경 공간에는 이동식피난기구(공기안전매트) 사용을 위해 일부 식재가 생략될 수 있으며, 각 동 전

- 면·주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식재공사, 수경시설 등은 인허가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 및 삭제될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소는 동 주변에 설치예정이나 전체 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될 예정으로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본 단지는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 시 조성공사 및 인근 아파트 단지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한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 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공고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시점 기준으로 도시기반시설의 실시설계 및 시공의 미완료에 따른 준공시 대지면적 또는 경계 등의 증감은 확정측량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정리할 예정이며, 공급대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단지 내·외부 레벨 차이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는 추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결과에 따라 소방전용도로가 추가·변경될 수 있음
 - 단지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에는 공공분양(659세대) 및 행복주택(329세대)이 같은 동 내 혼합 배치되어 있으며, 단지 내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 및 대지는 주택유형(분양, 임대)별 구분 없이 전체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특정 입주자(소유자) 또는 단체가 점유를 주장할 수 없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며, 공동주택단지와 별도의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주거시설과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동별·호수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인접 동 및 인접 세대에 의해 사생활의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각 동은 1, 2층이 필로티(301~305,307,308동 2호라인, 306,309,310,311동 3호라인)로 시공되어 있고, 304동 4호 라인에 키즈스테이션이 위치하여 일부 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304동 2,3,4호라인 저층세대는 주출입구 문주가 인접하게 설치되어, 전면 발코니 창호를 통한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옥외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일부 세대는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출입구 문주 및 301, 303, 309동 측벽에 우리 공사 CI가 부착될 예정이며 명칭,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음
 - 계절창고(총 304개소 중 일반형 103개소, 확장형 201개소)는 각 동 지하에 설치하며 각 동마다 설치 수량이 다를 수 있음
 - 계절 창고로 쓰이는 케이지 이외 내부 시설물 등은 설치되지 않고, 각 운영방법은 입주 후 결정·안내될 예정임(계절창고 설치 수량은 총 세대수 미만으로 설치되어, 일부 세대만 이용 가능할 수 있고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의 계절창고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외부(1층 또는 지붕층)에 실외기가 설치되며 가동 시 일부 인접세대는 소음·먼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별도의 실외기실 또는 외부에 실외기가 설치되며, 가동 시 일부 인접 세대는 소음·먼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 내 시설은 지역 주민이 같이 사용하게 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아파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화성시와 체결할 예정임. 다만, 입주(예정)자들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 및 각 동 주출입구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자동차 소음 및 전조등, 보안등, 지하주차장 경고등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법창은 설치되지 않음
- 지하주차장은 지하주차장과 각 동 계단실, 승강기 홀이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으로 설계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본 단지의 지하 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지하 1,2층(통로 및 출입구) 2.7m 이상, 지하1,2층(주차공간) 2.3m 이상으로 설계됨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승강기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차량 승하차 시 지하주차장 기둥에 간섭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주차대수는 지하 1,186대(지하2층 857대, 지하1층 32 9대), 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는 지상 6대(장애인 주차 1대 포함)이며, 총 1,192대 중 43대는 장애인 주차장임(장애인 주차장 동별로 상이함)
-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공공분양, 행복주택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단지 계획에 따라 동별 인근 주차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계획여건에 따라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 위치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대지는 근린생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
- 무인택배보관함 및 스마트우편함은 각 동별로 설치될 예정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동의 1층 세대에 가정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으며, 주변 세대에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동별 승강기 설치 인승, 속도 적용기준은 관련 법률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세대 조합별 운행층수에 의한 규격으로 적용 설치될 계획이며,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승강기 이용 세대수 차이가 있음
- 승강기 내부에는 공기청정기가 설치되며, 에어컨은 설치되지 않음
- 각 동에 설치된 승강기와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주택 특성상 지하층에 전기실, 저수조, 발전기실, 펌프실 등 공용시설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전기실·발전기실 설치로 인해 인근 동은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음[전기실, 발전기실 설치위치 : 302동 인근, 펌프실 설치위치 : 1개소(304동, 305동 인근), 열교환실 설치위치: 303동, 304동 인근]
- 단지 내 조경식재, 야외시설, 저층부 외관, 동 현관, 지하 출입구, 건축 및 토목옹벽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각 동 전면, 후면 조경 공간에는 이동식피난기구(공기안전매트) 사용을 위해 일부 식재가 생략 될 수 있음
- 자전거보관소, 생활자원보관소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 후 설치될 예정이고, 특히 생활 자원보관소는 세대 내에서 보일 수 있으며 주변으로 냄새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계약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치변경 요청은 수용이 불가함
- 304동 전면에는 근린생활시설(상가)용 생활자원보관소가 설치되어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 차량접근이 불가하거나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해 한전 전력기기(지중개폐기, 변압기)가 설치되며, 인접 동 및 세대의 미관을 저해할 수 있음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층 및 지붕층에 피뢰침이 설치되며, 일부 동 일부 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설치됨
- 차량출입구 인근동(301동,311동,303동,304동,305동)은 차량출입 및 출차 시 경광등 및 경고음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출입구에는 디지털차량번호인식시스템의 차량출입통제설비가 설치될 예정임

- 단지 내 CCTV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승강기, 놀이터, 동출입구, 생활자원보관소 및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됨
- 외부에서 홈네트워크 시스템 연동을 위해서는 고정IP가 필요하며, 공용 통신요금이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음
- 전체동 지붕층에는 태양광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태양광모듈 사양에 따라 동별 설치면적은 달라질 수 있음
- 공청 및 위성안테나는 304동 지붕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조사 결과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방송통신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이동통신 중계기설비 설치 예정 위치 : 302동·305동·310동·311동·옥상층 및 지하주차장 지하1·2층)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급속·완속충전기)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허용 자동차(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 자동차) 외 차량은 주차가 불가하며, 친환경자동차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충전시설 구역은 '충전구역' 표시됨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됨
- 아파트 외벽 기단부(하부1~3층)는 주로 석재로 시공되며, 일부분에 한하여 페인트 도장으로 마감됨
- 아파트 각 층 승강기 홀 및 계단실 내에 환기창은 전층 설치되나, 승강기 홀, 계단실의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에 따라 상이하여 환기 및 채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계단실 및 승강기 홀에 설치되는 창은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음
- 각 세대의 승강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점유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음
- 시설물의 위치·구조·색채와 지반고 등은 추후 측량결과와 지반현황 및 각종 평가·심의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동 표시·아파트 문양·벽체줄눈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물외부, 주 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는 관련 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내부마감이 없으며 별도의 실(室)로 사용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내 경사로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동 주변 팬룸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팬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기타 지상 돌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천장 마감은 무기질계 뽀칠로 시공됨
- 아파트 외관 디자인 계획에 의해 일부 세대의 발코니 외측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입면 몰딩 등의 설치에 따라 동별·층별·호별 입면의 돌출 정도에 차이가 있고, 각 동 옥상층에 난간대가 설치되며 강풍, 강우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문양 등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팜플릿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성능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성능향상 등을 위해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팜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음
- 세대 내 대피공간은 설치되지 않으며, 세대 실외기실 내부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며, 세대별로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각동 필로티층 세대 3층 바닥 및 1층 세대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필로티 최하층 세대에는 발코니 내에 완강기가 설치될 예정임
- 실외기실에는 철제문이 설치될 예정으로 외기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하향식

-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어 화재 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샬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지층·측벽·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 길이 및 높이, 실외기 설치 공간 등) 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 동의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음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 일반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세탁실) 공간이 협소하여 대용량 세탁기 및 건조기 설치가 제한되거나, 세탁기문과 벽 및 기타설비와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실외기실 내부 상부에 세대 환기시스템 전열교환기가 설치되며 실외기실 하향식 피난구 설치 위치에 따라 세대별로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바닥재, 벽지 및 벽타일, 인조대리석 등은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음
 - 세대 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
 - 벽지(도배) 공법상 초배지+정배지 봉투바름 시공 시 벽면과 도배지가 밀착되지 않음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어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자동소화장치 또는 레인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의 일부가 조정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 부대복리시설은 피트니스센터, 주민카페, 게스트하우스, 다목적실, 계절창고,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사회적기업, 관리사무소, 경비실, 키즈스테이션 등이 있으며, 내부 시설물(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단, 피트니스센터 내 운동기구는 향후 입주주민들의 부담으로 설치 후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현관, 발코니, 승강기 홀 등의 바닥 단차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실이 내부에 있어 에어컨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음
 - 세대 내 구조벽 외 조적벽체, 경량벽체 등이 시공될 예정임
 - 거실 아트월 하부는 걸레받이가 미시공됨
 - 욕실 출입문은 합성수지 재질이며, 욕실 천장재는 ABS 판넬로 시공되며 천장에 점검구 시공 예정임
 - 각 단위세대 형별로 평면계획에 의거 주방가구 길이가 서로 상이함
 -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임
 - 일부 발코니에는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 환기용유니트 및 덕트, 선홈통 등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공사용 하드웨어는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에 설치되는 외부창호의 개폐 위치 및 방향은 본 공사 시 달라질 수 있음
 - 세대 천장고는 2.3m로 시공오차에 의해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사업지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방가구, 강화합판 마루 등의 자재는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음
 -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 있는 벽, 바닥, 천장은 원활한 시공을

위해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세대 내 타일 및 아트월 나누기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거실 월패드 설치부분에 타일 나누기 줄눈이 간섭될 수 있음
-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 배관 등이 설치되므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하며 침실 및 거실벽에 설치되는 온도조절기의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욕실은 습식욕실로 시공되며,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평형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욕실천장에 설치되는 욕실팬은 평형별로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음
- 공용욕실에 비데가 설치되며, 부부욕실에는 비데 일체형 양변기가 설치됨. 위치 변경을 원할 경우 수분양자가 입주 후 직접 변경하여야 함
- 세대 내 실내 환기는 기계환기방식(강제급기+강제배기)을 적용하며, 덕트 및 디퓨저는 거실과 각 침실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 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방배기는 옥상에 배기팬이 설치되고 세대 레인지후드에는 댐퍼만 설치되는 공용배기방식을 적용함
-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됨
- 최상층 세대의 경우 동력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소방관련 법(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제연설비가 설치된 아파트에는 일부 세대의 현관 출입문에 차압측정공이 설치됨
- 세대 내 기본설치 품목인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은 거실 및 침실1에만 설치되며,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설치됨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팸플릿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층 승강기 홀에 설치되는 환기설비 및 제습기 가동으로 전기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세대 무인경비 동작감지기는 1,2층 및 최상층의 경우 발코니 및 침실의 창호 측면부 각 1개소에 설치되며, 그 외층 동작감지기는 거실 창호 측면부 1개소에 설치됨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시공됨
- 승강로 및 권상기실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세대통신단자함은 신발장 뒷면에 설치 예정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부부욕실에 설치되는 무선형 비상버튼(주거약자용은 욕실 비상콜 설치)을 누를 경우 월패드, 관리실, 경비실에 경보음이 울리게 되며, 설치제품에 대한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와 실외기실 조명기구는 환기유닛 설치에 따라 벽부형 또는 천장형으로 설치됨
- 빨래건조대가 설치되는 발코니는 빨래건조대 자체조명이 리모콘으로 점·소등되며, 별도의 조명 기구가 설치되지 않음
- 최상층 세대의 스피커는 벽부형으로 설치되며, 최상층을 제외한 기타층 세대는 천장형으로 설치됨
- 무선랜(AP) 초기비밀번호는 입주 시 안내 될 예정이며, 변경이 가능하고 비밀번호 분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급속·완속충전기)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 홈네트워크시스템 세대단말기(WallPad10"LCD)는 게이트웨이 기능포함 일체형이며, 방법서비스(도어카메라, 현관자석감지기 및 동작감지기와 연동), 제어서비스(가스밸브차단, 거실 및 침실1 네트워크스위치조명, 난방온도, 디지털도어록), 단지공용기본서비스(공동현관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차량출입통제시스템연동)를 제공함
- 생활정보기가 설치되며, 일괄소등(현관센서등 제외), 날씨정보제공, 승강기 호출 및 가스차단 기능을 함
- 식탁용 조명기구는 펜던트 타입으로 설치되며 위치이동은 불가능함

■ 일반 사항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음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음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동일 주택형이라도 동호라인에 따라 팸플릿과 달리 평면이 대칭되어 시공됨
- 세대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검토를 위하여 샘플하우스(현장 견본세대)로 사용될 수 있음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사업지구를 방문하여(현장은 출입불가)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함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임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함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물의 외관, 조경, 식재디테일은 인허가 및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의 각 항목에 대한 설치는 최초 계약신청 접수분에 한해 가능하며, 계약 전 필히 확인이 필요함
- 근린생활시설(상가)과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단지 주출입구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어린이놀이터 포함), 운동시설 등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 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특성 및 거주자의 생활환경 차이 등으로 층간, 세대 간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타 등이 있을 수 있음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잔금완납 포함)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함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가 설치하는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은 실내구조(폭, 높이, 깊이 등) 및 형태에 따라 배치 불가능할 수 있음

■ 학교 개교시기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

- 초등학생은 (가칭)비봉1초(‘25.3월 개교예정), 중학생은 비봉중학군[비봉중, (가칭)비봉1중(‘25.3월 개교예정)], 고등학생은 화성시 기존 고등학교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 인근에 비봉고가 위치하고 있으나, 화성시는 고교 비평준화 지역으로 인근 학교뿐만 아니라 화성시 전역에 진학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청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학군 내 모든 중학교에 대하여 '선 복수 지원 후 추첨방식'으로 배정되므로 인근 중학교로의 진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및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배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설학교 설립계획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및 학생배치계획, 교육여건 변화 등에 따라서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교육정책 및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학생 배치계획 변동요인 발생 시 주변 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학생 배치계획(학교설립, 학급당 학생수 등)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향후 학교설립계획 및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군, 고등학교는 조정(변경) 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입주시기, 세대수, 주택공급유형)의 변경, 교육정책 및 주변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변동요인 발생 시 학생배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 및 위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지구 내 계획 중인 신설학교는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1) 소음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화장실 급배수소음		★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 성능		★★
외부소음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2) 구조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가변성		★★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공용부분	★★
내구성		★
지속가능한 자원활용 (리모델링시에만 평가)	주요구조부 재사용	-
	비내력벽 재사용	-

3)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조경	생태면적율	★
	자연지반 녹지율	★
	연계된 녹지축 조성	-
	비오톱 조성	-
생태적가치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인접대지 영향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세대내 일조확보율		★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여부	★★
	자연통풍 확보 여부	-
폐기물 최소화	생활용 가구재 사용억제 대책의 타당성	-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음식물 쓰레기 저감	-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표시	★★★
우수부하 절감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

3)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수자원 절약	생활용 상수 절감대책의 타당성	★★
	우수이용	-
	중수도 설치	-
에너지절약	에너지성능	★★★★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
지구온난화방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특정 물질의 사용금지	★

4) 생활환경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 공간의 조성수준		★★★★
보행자 도로	단지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
	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여부	★★★★
교통부하저감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 간의 거리	
사회적 약자의 배려	전용부분	★
	공용부분	★★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온열환경	각 실별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 여부	★★
방법안전	방법안전 콘텐츠	★★
체계적인 현장관리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 계획의 합리성	★★★★
효율적인 건물관리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5) 화재소방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화재.소방	감지 및 경보설비	★★
	제연설비	★
	내화 성능	★
피난안전	수평피난거리	★
	복도 및 계단 유효폭	★★★★
	피난설비	★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구 분	적용 여부
측벽	적용	바닥(층간바닥)	적용
외벽(직접면)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외벽(간접면)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창호(직접면)	적용	LED조명	적용
창호(간접면)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지붕	적용	절수설비	적용
바닥(직접면)	적용	고효율설비	적용
바닥(간접면)	적용		

* 적용/미적용 여부 표기

12.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A-3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금강주택	-	(주)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표업체)

1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의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 대상자에 따른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24.04.22(월)~04.24(수)) 단, 공정진행 정도에 따라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또는 [공사양식_별지5](#) 참고
- ▶ 신청 시 필요서류 :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수첩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 전자계약 체결하시는 분 중 편의증진시설 설치 해당세대인 경우 **신청서 및 신청자격 서류를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함** (우체국 소인이 '24.04.24(수) 이내여야 함)

* (발송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LH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화성비봉 A-3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 주거약자용 주택(59A1/59B1형) 편의시설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을 중복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경 사 로) 마루귀틀에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거실	(비디오폰) 바닥에서 1.2m 이내	
	(시각경보기) 세대별로 설치	청각장애인
부엌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좌식싱크대)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욕실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에서 1.2m 이내	
	(세 면 기) 높낮이 조절용 설치	
침실	(여유공간) 좌변기 옆 75cm 이상 확보	청각장애인
	(조명밝기) 300~400럭스(lux)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59A1/59B1형 외 주택에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신청 불가

- 상이 3급 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애 3급 이상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급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위해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cm이상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주방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가스밸브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거실	센서등	욕실출입구 천장에 설치	
	비디오폰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문의처	전 화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인터넷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http://www.myhome.go.kr) 화성비봉 A-3블록 행복주택 홈페이지(http://lhhs-A3.co.kr)
당첨자 ARS	☎ ARS(☎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1. 1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